



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금지, 환자안전의 첫 걸음

감염 또는 손상의 위험이 매우 높아 재사용이 금지되는 일회용 의료기기

※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2-404호(2022.5.23.)

- ① 무균조직에 삽입하는 카테터류(예: EPIDURAL CATHETER 등)
- ② 혈관 내로 삽입하는 카테터류(예: CENTRAL VEIN CATHETER 등)
- ③ 혈액 및 체액 등이 배출되는 카테터 및 배액 용기(예: CHEST TUBE, HEMOVAC 등)
- ④ 이식형 의료기기(예: SCREW, PLATE, 인공심박동기, 임플란트 등)
- ⑤ 크로이츠펠트-야콥병이 의심 또는 확진된 환자에게 사용한 의료기기(단, 관련 지침에 따라 고압열균법, 화학적 처리방법을 이용하여 오염을 제거한 내열성 기구 제외)
- ⑥ 기타 감염 집단발생의 역학적 요인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기



보건복지부

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

h·well
국민건강보험
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

